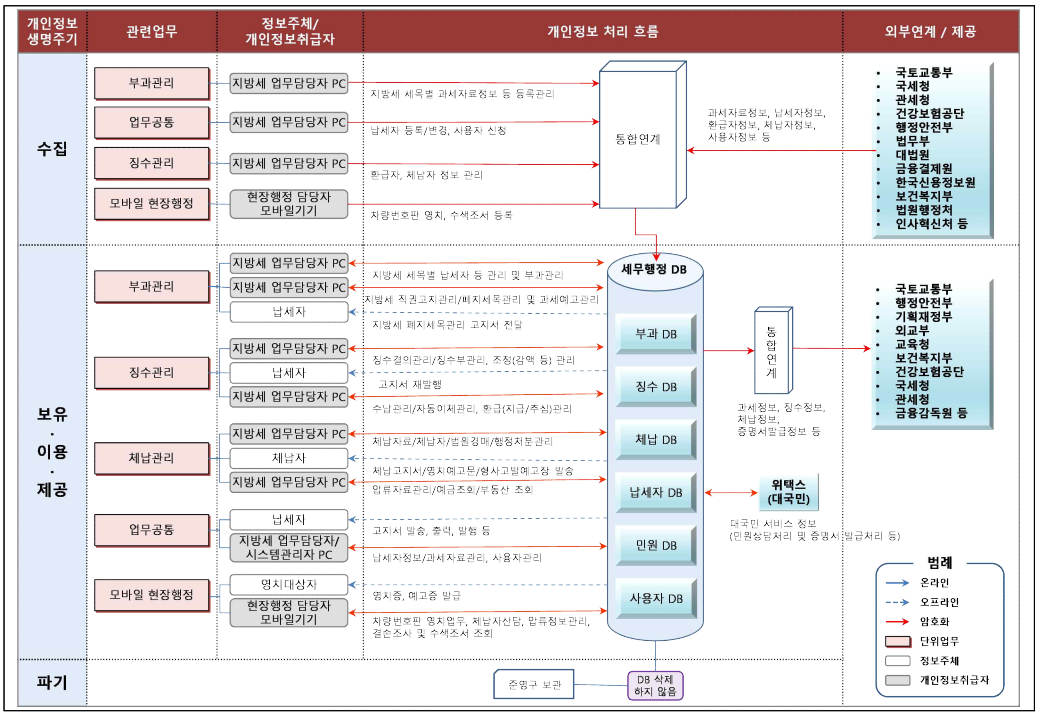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인천광역시 남동구</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케이씨에이컨소시엄</td><td>평가 기간</td><td>2026.03.27. ~ 2026.04.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6.01.01. ~ 2026.12.31.</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지능형 지방세 정보체계 구현"
• 첨단 정보기술 적용, 업무 프로세스 쇄신 등으로 ①맞춤형 납세편의, ②효율적 세입행정 ③지방세입 신뢰도 제고를 혁신적으로 달성
• 지방분권, 전국 고른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세외수입 행정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현</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2">개인정보파일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 colspan="2">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등록면허세(면허) 관리</td><td>314,006</td><td colspan="2">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td><td>등록면허세(면허) 과세를 위한 부과 관리</td></tr>
</table>

	재산세 관리	781,530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국가기관, 전국지자체, 정부산하기관 등.	재산세 과세대장(토지. 건물대장)
	주민세 관리	1,109,230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과오납 관리	433,252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정보(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과오납반환 대상자의 신상정보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관리	434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정보(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지방세 세무조사 자료 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1,152,700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지방세 수납자료 관리
	지방세자동이체관리	14,116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지방세제증명관리	312,818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관리	1,589,485	주민등록번호	국세청,세무서 등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부과관리 자료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표준지방세시스템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table>
<tr><td colspan="2"></td><td>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td></tr>
<tr><td rowspan="2">영향평가기준</td><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8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15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td></tr>
<tr><td>주요 평가기준</td><td>-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td></tr>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u>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u>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 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의 명확화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부내용의 현행화 등이 필요함</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td><td><u>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u>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 반면, 내부 보유기간 관리는 5년 또는 10년으로 관리 및 공개하고 있는 면은 개선이 필요함</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내규 개정 (1.4.1) :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 마련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재산정 (3.2.1) : 내부 개인정보 보유기간 기준 '준영구' 관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2.3.2/3.1.9/3.4.1) : 동의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 목록 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재수탁사 및 수탁사 변경 사항 현행화</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사항 파악
• 동의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현황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확인</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계획, 개인정보 침해대응 평가분야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정보주체 권리보장 평가분야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됨. 해당없음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 이행(89%) 및 1개 항목 부분이행(11%)함.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와 개인정보파일 관리 평가분야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분야는 일부 보완이 필요함. 해당없음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 이행(83%) 및 1개 항목 부분이행(17%)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영역은 이용·제공 및 파기 평가분야는 양호하게 평가되는 반면, 수집 분야의 동의받는 방법의 적절성, 보유 분야의 보유기간 산정, 위탁 분야의 위탁사실 공개 항목 세부분야는 일부 미흡한 상태로 평가됨. 해당없음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 이행(80%) 및 3개 항목 부분이행(20%)함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 프로그램 등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조치의 모든 평가분야가 전반적으로 양호한것으로 평가됨. 해당없음 항목을 제외한 22개 항목을 적절하게 이행(100%) 하고 있음.
•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영역은 대상시스템과 연관성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추가적으로 요즘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빈번함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td></tr>
</table>